

#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

Taiwan Non Tariff Barriers Issue

## 대만, 식품 내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발표 (2024년 7월 1일 시행)



### 영유아용 식품, 견과류, 초콜릿, 동물류 내장 등 다양한 식품에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 개정

2023년 11월 13일, 대만 보건복지부는 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질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「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 食品中汚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(제1111300972호령)」에서 제3조 부록 1과 제6조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함

1. **배경** : 대만은 「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」을 통해 식품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식품 잔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.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은 제 3조의 부록 1을 통해 식품의 중금속 한도, 제 4조의 부록 2를 통해 곰팡이독소 한도, 제 5조의 부록 3을 통해 기타 오염물질 및 독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. **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3조의 부록 1에 대해 영유아용 식품, 가공류 내장, 견과류 등 여러 품목의 중금속 잔류 기준과 품목별 잔류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각 품목의 정의를 개정 및 신규 제정함.** 본 법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**2024년 7월 1일 시행**될 예정임

2. **중금속 잔류 한도(제 3조 부록 1) 개정 내용**(각 품목별 구체적인 정의와 그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은 [원문](#) 표 하단 참조)

중금속	기존 규정		변경 규정	
	품목	잔류 기준(mg/kg)	품목	잔류 기준 (mg/kg)
납	소, 양 돼지 가공류의 식용 내장	0.5 <sup>a</sup>	소, 양의 식용 내장	0.2 <sup>a</sup>
			식용 돼지 내장	0.15 <sup>a</sup>
			식용 가공류 내장	0.1 <sup>a</sup>
	영아용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분유	0.050(분말 형태 판매) <sup>b</sup>	영아용 조제분유, 성장기용 조제분유, <b>유아용 조제분유</b>	0.020(분말 형태 판매) <sup>b</sup>
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유아용 조제분유	0.050 <sup>b</sup>	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유아용 조제분유	0.020 <sup>b</sup>	
이 표의 2.10.1, 2.10.2 및 2.10.3* 항목에 있는 액체 형태 제품을 제외하고 영유아용으로 표시 및 판매되는 음료	0.030 <sup>b</sup>	이 표의 2.10.1 및 2.10.2**에 따른 <b>액상 제품</b> 을 제외하고 영유아용으로 표시 및 판매되는 음료	0.020 <sup>c</sup>	

(a) 신선/습식 중량기로 측정함

(b) 판매 형태를 기준으로 적용됨

(c) 액체 형태로 판매되거나 라벨 지침에 따라 음용으로 준비된 제품에 적용됨

중금속	기존 규정		변경 규정		
	품목	잔류 기준(mg/kg)	품목	잔류 기준(mg/kg)	
카드뮴	대두, 땅콩	0.2 <sup>a</sup>	견과류, 유지종자, 대두	잣	0.3
				기타견과류	0.2
				대두와 땅콩	0.2 <sup>a</sup>
				유채씨	0.15
				겨자씨	0.3
				아마씨와 해바라기씨	0.5
				기타 유지종자	0.1
	-	-	유아용 조제분유 중 식물성 단백질(대두 단백질 제외)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우유 단백질과 혼합하여 만든 분유	0.010(액상) <sup>b</sup>	
	-	-	이 표의 3.6.1, 3.6.2 및 3.6.4 <sup>***</sup> 항목에 해당하는 액상 조제 제품을 제외한 영유아용 음료의 라벨링 및 판매	0.020(분말) <sup>b</sup>	
	-	-	초콜릿(총 코코아 고형분 함유량이 50% 이상 70% 미만)	0.020 <sup>c</sup>	
-	-	초콜릿(총 코코아 고형분 함유량 70% 이상)	0.8		
수은	수생동물(어류)	하위 품목별 잔류 기준 존재	수생 동물(어류)	하위 품목별 잔류 기준 존재	※ 총 수은 시험 결과가 메틸수은 한계치 이하인 경우에는 메틸수은 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

(\*) 영유아용 조제분유, 성장기용 조제분유,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/유아용 조제분유, 영유아용 곡물기반식품, 영유아 보조식품(곡물기반식품 및 우유 기반 음료 제외)  
 (\*\*\*) 우유 단백질, 단백질 가수분해물, 또는 분리 대두 단백질을 사용한 영아용/성장기용 조제분유와 유아용 조제분유 중 식물성 단백질(대두 단백질 제외)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우유 단백질과 혼합하여 만든 분유

### 3. 시행일 : 2024년 7월 1일

#### 한국 식품 기업, 식품 수출 시 변경된 대만의 중금속 잔류기준 확인하여 준비 필요

한국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에 대한 카드뮴 한계 0.3mg/kg,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, 성장기용 조제식, 영유아용 이유식, 영아용 조제식에 납 한계 0.01mg/kg(분말 제품의 경우 제품의 지침에 따라 섭취 형태로 희석한 것을 기준)로 설정하고 있음. 개정된 대만의 영유아용 식품의 납 잔류기준은 모두 한국의 기준보다 높으나, 제품 수출 시 판매되는 형태에 잔류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납 잔류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함. 또한 대만으로 견과류, 영유아용 제품, 초콜릿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된 카드뮴 잔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

#### 출처

衛生福利部, 預告「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」第6條及第3條附表1修正草案, 2023.11.03

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, 預告修正「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」第六條及第三條附表一, 2023.11.13

全國法規資料庫, 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, 2022.07.06